

제10장 투자

제10.1조 목적

이 장은 각 당사국 영역 내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정된 규칙의 틀 내 투명성의 조건 하에서, 국민 건강,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양 당사국의 규제권한과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상호 호혜적 기초하에 양 당사국 간 투자의 흐름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임명권자란 다음을 말한다.

- 가. 제10.20조제3항가호 및 나호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 절차규칙에 따른 중재의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총장, 제10.20조제3항다호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의 경우 상설중재재판소 사무총장, 또는
- 나. 분쟁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사람

청구인이란 다른 쪽 당사국과의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를 말한다.

분쟁 당사자들이란 청구인과 피청구국을 말한다.

분쟁 당사자란 청구인 또는 피청구국 어느 하나를 말한다.

기업이란 제1.5조(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과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지점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 절차규칙이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국에 의한 절차행정을 위한 추가 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국가와 타방 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투자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업

나. 주식, 증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그로부터 파생된 권리를 포함한다)

다. 정부 발행 채권을 포함한 채권, 회사채 및 대부¹와 그 밖의 형태의 채무 및 그로부터 파생된 권리

라. 선물, 옵션과 그 밖의 파생상품

마.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또는 수익배분 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른 권리

바. 지식재산권

사. 양허, 면허, 인가 및 허가와 같이 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²³, 그리고

아.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 · 저당권 · 유치권 및 질권과 같은 관련 재산권⁴

비당사국의 투자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투자자로서, 어느 쪽 당사국의 투자자도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¹ 채권, 회사채 및 장기어음과 같은 일부 형태의 부채는 투자의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높은 반면, 즉각적인 지급만기의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의 결과인 지급청구권과 같은 그 밖의 형태의 부채는 그러한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낮다.

² 특정한 유형의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그러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는 한도에서, 양허를 포함한다)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당사국 법에 따라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성격과 범위 같은 그러한 요소에 달려 있다.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면허, 인가, 허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수단 중에는 국내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앞 내용은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과 연계된 자산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³ “투자”라는 용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에 들어있는 명령 또는 판결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득,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니다.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한쪽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그 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한 분쟁의 경우,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간주된다.

뉴욕협약이란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체결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을 말한다.

비분쟁당사국이란 투자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국을 말한다.

보호정보란 비밀 영업정보, 또는 정부 기밀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특별취급을 받거나 달리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정보를 말한다.

피청구국이란 제2절에 따라 청구가 제기된 당사국을 말한다. 그리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이란 2010년 개정된 또는 당사국들 간에 추후 합의되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

제1절 투자

제10.3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 나. 적용대상투자, 그리고
 - 다. 제10.11조와 제10.13조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상황에 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구속하지 아니한다.
3. 이 장은 제8.2조(정의)에 정의된 대로,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장은 제8.2조(정의)에 정의된 대로, 금융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0.4조 다른 장과의 관계

1.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다른 장이 우선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국경 간 서비스공급의 조건으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를 기탁하여야 한다는 한쪽 당사국의 요건은, 그 자체만으로 이 장이 그러한 국경 간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은 기탁된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가 적용대상투자가 되는 한도에서, 그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제10.5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 인수 · 확장 · 경영 · 영업 ·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 · 인수 · 확장 · 경영 · 영업 ·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제10.6조 최혜국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 인수 · 확장 · 경영 · 영업 ·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 · 인수 · 확장 · 경영 · 영업 ·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언급된 대우는 제2절에 규정된 것을 포함한 국제 분쟁해결 절차 또는 메커니즘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7조 최소기준⁵대우

1.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 관습법상 대우의 최소기준에 따른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국제관습법상 대우의 최소기준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하는 대우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창설하지 아니한다.
 - 가. 제1항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의무는 적법절차의 일반 원칙에 따라 형사, 민사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정의를 부인하지 아니할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 나. 제1항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의무는 각 당사국이 그 투자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찰권의 행사에 있어 합리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다.
3. 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아니한다.

제10.8조 무력충돌 또는 내란 시의 대우

1. 제10.15조제5항나호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충돌, 또는 반란, 폭동, 소요 또는 그 밖의 내란으로 인하여 자국 영역 내 투자가 입은 손실에 관하여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자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1항에 언급된 상황에서 다음의 결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손실을 입는 경우,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징발, 또는
 - 나. 상황의 필요상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파괴

⁵ 이 조는 부속서 10-가에 따라 해석된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 투자자에게 그러한 손실에 대하여, 각 경우에 맞게, 원상회복, 보상 또는 양자 모두를 제공한다.⁶ 모든 보상은 제10.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이도록 한다.

3. 제1항은 제10.15조제5항나호가 아니었다면 제10.5조에 불합치하였을 정부 지원 용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관한 기존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0.9조 수용 및 보상⁷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국유화 또는 수용과 동등한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통하여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국유화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

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그리고

라. 적법절차를 따를 것

2. 보상은,

가. 자체 없이 지불되어야 한다.

나. 수용이 발생하기(이하 “수용일”이라 한다)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하여야 한다.

다.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라.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여야 한다.

3.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지불된 보상은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그 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더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상회복 및 보상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 양자의 합산 가치는 그 손실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⁷ 이 조는 부속서 10-나에 따라 해석된다.

4.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 아니한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지불일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지불통화로 환산된, 지불된 보상은 다음을 합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가. 수용일의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환산된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 그리고

나. 그 자유사용가능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

5. 이 조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이나 지식재산권의 취소, 제한 또는 생성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그러한 발동, 취소, 제한 또는 생성이 제11장(지식재산권)과 합치하는 것을 한도로 한다.⁸

제10.10조 송금

1.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内外로 자유롭고 자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최초 출자금을 포함한 출자금

나. 이윤, 배당, 이자, 자본이득, 로얄티 지불, 관리 수수료, 그리고 기술지원 및 그 밖의 수수료

다. 적용대상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에 따른 대금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청산에 따른 대금

라. 대부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을 포함하여,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바. 분쟁해결로부터 발생한 지불, 그리고

사.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관여한 사람의 소득 및 그 밖의 보수

⁸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이 조의 목적상 지식재산권의 “취소”라는 용어가 그러한 권리의 취소 또는 무효화를 포함하며, 지식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용어가 그러한 권리에 대한 예외를 포함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송금이 송금의 시점에서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가. 과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다.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라. 형사범죄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바. 사회보장, 공적퇴직연금, 또는 강제 저축 제도, 또는

사. 과세

제10.11조 이행요건

1.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 인수 · 확장 · 경영 · 영업 · 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대한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요하지 아니한다.⁹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출할 것

나.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할 것

다.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 할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

라.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킬 것

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2 항에 언급된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대한 조건은 이 항의 목적상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마.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자국의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 바. 자국 영역의 인에게 특정한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할 것, 또는
- 사.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공급하는 서비스를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

2.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 인수 · 확장 · 경영 · 영업 · 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할 것
- 나.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할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
- 다.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킬 것, 또는
- 라.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3.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와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생산의 입지, 서비스의 공급, 근로자의 훈련 또는 고용, 특정한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또는 연구 및 개발의 수행을 자국 영역에서 하여야 한다는 요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제1항바호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당사국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1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또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9조의 범위 내에 해당하고 이에 합치되는 재산권적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조치, 또는
- 나. 당사국의 경쟁법에 따라 반경쟁적인 것으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에 판정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 · 행정재판소 또는 경쟁

당국에 의하여 요건이 부과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이 강제되는 경우
10

5. 제1항가호부터 다호까지, 그리고 제2항가호 및 나호는 수출진흥 및 외국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제1항나호 · 다호 · 바호 및 사호, 그리고 제2항가호 및 나호는 정부조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제2항가호 및 나호는 특혜관세 또는 특혜쿼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 한 상품의 구성품에 관하여 수입 당사국이 부과하는 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은 그 항에 규정된 것 외의 어떠한 약속 · 의무부담 또는 요건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9. 이 조는, 당사국이 그러한 약속 · 의무부담 또는 요건을 부과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간 당사자 간의 어떠한 약속 · 의무부담 또는 요건의 강제도 배제 하지 아니한다.

제10.1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 어떠한 당사국도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이 고위 경영직에 특정한 국적의 자연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의 이사회나 산하 위원회의 과반수가 특정 국적이거나 자국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은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13조 투자와 환경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 내 투자활동이 환경적 고려에 민감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달리 이 장에 합치되는 조치를 채택, 유지 또는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¹⁰ 양 당사국은 특허가 반드시 시장지배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인정한다.

제10.14조 혜택의 부인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통보¹¹를 조건으로, 다음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 가. 비당사국의 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에 의하여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 또는
- 나.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

2. 제1항에 따라 혜택을 부인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보 이후 신속히 협의를 개시한다. 그러한 협의는 제19장(분쟁해결)과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양해」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0.15조 비합치 조치

1. 제10.5조, 제10.6조, 제10.11조 및 제10.12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또는
 - 2) 지방정부
-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개선, 또는
-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0.5조, 제10.6조, 제10.11조 및 제10.12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¹¹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한쪽 당사국은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통보를 한다.

2. 제10.5조, 제10.6조, 제10.11조 및 제10.12조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채택되고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의 대상이 되는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4. 제10.5조 및 제10.6조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대로 그 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에 대한 예외 또는 이탈인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10.5조, 제10.6조 및 제10.12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조달, 또는

나.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6. 양 당사국은 비합치조치를 점진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제10.16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1. 제10.5조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대상투자가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성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당사국이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하여 특별형식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형식은 이 장에 따라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하는 보호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제10.5조 및 제10.6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정보수집 또는 통계상의 목적을 위하여만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가 그 투자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비밀 영업정보를 보호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법의 공평하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과 관련하여 정보를 달리 획득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0.17조 대위변제

1. 한쪽 당사국(또는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 단체, 법정 기구, 또는 기업)이 비상업적 위험에 대비하여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보증, 보험계약 또는 그 밖의 형식의 보장에 따라 그 당사국의 투자에게 지불을 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투자에 관한 모든 권리 또는 자격의 대위변제 또는 이전을 인정한다. 대위변제 또는 이전된 권리 또는 청구는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한쪽 당사국(또는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 단체, 법정 기구, 또는 기업)이 그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지불을 하고 그 투자자의 권리 및 청구를 인수한 경우, 그 투자자는, 그 지불을 한 당사국(또는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 단체, 법정 기구, 또는 기업)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승인 받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 및 청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제2절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제10.18조 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분쟁해결

1. 이 절은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제1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그러한 위반이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그러한 위반 주장에 관한 그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분쟁에 적용된다.

2. 이 절은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발생한 투자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한쪽 당사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소유한 국민은 이 절에 따른 청구를 그 당사국에게 제기하지 아니한다. 국민이 비당사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 또한 보유한 경우, 그는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간주된다.

제10.19조 협의 및 교섭

1.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인 및 피청구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 및 교섭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이는 비구속적인 제3자 절차의 이용을 포함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피청구국에게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조치들에 대한 사실의 간략한 기술을 명시한 서면 협의 요청서를 전달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의 및 교섭의 개시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 한다.

제10.20조 중재 청구 제기

1. 투자분쟁이 제10.19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서면 요청을 피청구국이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은, 자기자신을 위하여, 다음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가. 피청구국이 적용대상투자의 경영, 영업, 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제1절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 그리고

나. 청구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2.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 전에, 청구인은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이하 “의사통보”라 한다)를 피청구국에게 전달한다. 의사통보는 다음을 명시한다.

가.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나. 각 청구마다,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제1절의 규정과 이 협정의 그 밖의 관련 규정

다. 각 청구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 그리고

라. 구하는 구제조치와 청구하는 손해의 대략적 금액

3. 청구인은 다음의 대안 중 하나에 따라, 제1항에 언급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가. 피청구국 및 비분쟁 당사국이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과 국제투자분쟁 해결 센터 중재절차의 절차규칙

나. 피청구국 또는 비분쟁 당사국 중 하나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 절차규칙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라. 청구인 및 피청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중재기관에게 또는 그 밖의 중재규칙에 따라

4. 청구는 다음의 시점에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 또는 중재요청(이하 “중재통보”라 한다)이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추가 절차규칙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언급된 청구서면과 함께 피청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또는
 - 라. 제3항라호에 따라 선택된 그 밖의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피청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그러한 중재통보가 제출된 후 청구인이 최초로 주장하는 청구는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접수일에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5. 제3항에 따라 적용가능하고 이 절에 따라 하나 또는 복수의 청구가 중재에 제기된 날에 유효한 중재규칙은, 이 협정에 의하여 수정된 한도를 제외하고는 그 중재를 규율한다.

6. 청구인은 중재통보와 함께 다음을 제출한다.

가. 청구인이 임명하는 중재인의 성명, 또는

나. 임명권자가 그 중재인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청구인의 서면 동의서

제10.21조 중재에 대한 각 당사국의 동의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제1항에 따른 동의와 이 절에 따른 중재 청구 제기는 다음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분쟁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위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2장(센터의 관할권)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 절차규칙의 요건, 그리고

나. “서면 합의”를 위한 뉴욕협약 제2조의 요건

**제10.22조
각 당사국의 동의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청구인에게 손실 또는 손해를 야기하는 제1절에 따른 의무의 위반을 청구인이 최초로 인지하였거나 최초로 인지하였어야 할 날 중에서 더 빠른 날부터 3년 6개월이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없다.
2.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청구도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되지 아니한다.
 - 가. 청구인이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재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그리고
 - 나. 중재통보에 어느 한쪽 당사국 국내법에 따른 행정재판소나 법원, 또는 그 밖의 분쟁해결절차에서 제10.20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조치에 대하여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하는 권리에 대한 청구인의 서면 포기서가 수반되는 경우
3. 제2항나호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에서 임시 가처분을 구하고 금전적 손해배상의 지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소송을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송은 중재가 계속되는 동안 청구인의 권리 및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기되어야 한다.

**제10.23조
중재인의 선정**

1.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당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
2. 임명권자는 이 절에 따른 중재를 위하여 임명권자의 역할을 한다.
3. 청구가 중재에 제기된 날부터 7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임명권자는 어느 한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재량으로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임명권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를 의장 중재인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9조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 절차규칙 제3부제7조의 목적상, 그리고 국적 외의 근거로 인한 중재인에 대한 이의제기를 저해함이 없이

- 가. 피청구국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 절차규칙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동의한다. 그리고
- 나. 제10.20조제1항에 언급된 청구인은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서면으로 합의하는 조건에서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 절차규칙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계속할 수 있다.

제10.24조 중재지

1. 분쟁당사자들은 제10.20조제3항에 따라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법적 중재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지를 결정한다. 다만, 중재지는 뉴욕협약의 당사국인 국가의 영역이어야 한다.

2.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와 중재인들의 편의성, 사건대상의 소재지, 그리고 증거에의 근접성을 포함하는 적절한 요소를 고려하여, 협의 및 심리를 포함하는 회의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앞 문장은 중재판정부가 제1항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어떠한 적절한 요소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0.25조 협정의 해석

1.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분쟁에 있어 문제가 되는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공동해석을 요청한다. 공동위원회는 그 요청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표명하는 공동 결정을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제출한다.

2. 제1항에 따라 내려진 공동위원회의 공동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판정은 그 공동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스스로 그 문제를 결정한다.

3. 비분쟁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구두 및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분쟁 당사국은 자국의 구두 입장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한다.

제10.26조 중재의 수행

1.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가 분쟁당사자의 입장 및 주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조언자 서면입장을 분쟁당사자가 아닌 인 또는 실체로부터 수용하고 검토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입장제출 수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외부조언자가 절차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도를 고려한다.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들에게 그러한 서면입장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제기를 포함하여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다는 이의제기와 같은 다른 이의제기를 본안 전 문제로 다룰 수 있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저해함이 없이, 중재판정부는 제기된 청구가, 법률상의 문제로서, 제10.30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청구가 아니라라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를, 본안 전 문제로 다루고 결정한다.

- 가. 그러한 이의제기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이 자국의 반론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또는 중재통보에 대한 수정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이 수정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정한 날)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제출된다.
- 나.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그 밖의 본안 전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립한 일정에 합치하도록 그 이의제기를 검토할 일정을 수립하며,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힌다.
- 다.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결정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중재통보(또는 중재통보의 수정)상의 청구내용을 뒷받침하는 청구인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제기된 분쟁의 경우 관련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언급된 청구서면을 사실이라고 가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분쟁 중이 아닌 관련 사실도 검토할 수 있다. 또는,
- 라. 피청구국이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속절차 이용을 하였거나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국이 관할권에 대한 이의제기를 포함하여 권능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나 본안에 관한 어떠한 주장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3.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피청구국이 요청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내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의제기를 포함해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다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히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요청일 후 150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힌다. 그러나, 분쟁당사자가 심리를 요구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는데 30일을 추가로 소요할 수 있다. 심리가 요구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재판정부는 특별한 이유가 제시되는 때에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추가적인 단기간 동안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는 것을 연기할 수 있다.

4. 중재판정부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피청구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때, 정당한 경우, 이의제기를 제출하거나 반박하는 데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및 변호사 보수가 송소한 분쟁당사자에게 지불되도록 판정할 수 있다. 그러한 판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청구 또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가 근거가 없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분쟁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다.

5.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보험 또는 보증 계약에 따라 주장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배상 또는 그 밖의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고 항변, 반소, 상계권이나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주장하지 아니한다.

6.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완전히 유효하게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의 보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거나 중재판정부 관할권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포함하여, 잠정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압류를 명령하거나 제10.20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조치의 적용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항의 목적상, 명령은 권고를 포함한다.

7. 이 절에 따라 수행된 모든 중재에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배상책임에 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당사자들 및 비분쟁당사국에게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을 송부한다. 중재판정부가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을 송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당사자들은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도 중재판정부에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60일의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그러한 모든 의견을 검토하고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린다.

8. 제7항의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에 대한 분쟁당사자들의 잠정 검토 절차는 제9항에 따라 불복청구가 가능하게 된, 이 절에 따라 수행된 어떠한 중재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9. 투자분쟁을 심리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 또는 투자 협정에 따라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을 재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소 기구를 설치하는 별도의 다자간

협정이 양 당사국 간에 발효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다자협정이 양 당사국 간에 발효된 후에 개시된 중재에서 이 조 및 제10.30조에 따라 내려진 결정 및 판정을 그려한 상소기구가 재심하도록 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0.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합치되게, 영어와 한국어가 모든 심리, 입장제출, 결정 및 판정을 포함한 전체 중재절차에서 사용되는 공식 언어이다.

제10.27조 중재절차의 투명성

1.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피청구국은 다음의 문서를 수령한 후 신속하게 비분쟁당사국에게 송부하고 대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한다.

가. 의사통보

나. 중재통보

다.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변론서, 이유서 및 준비서면과 제10.25조제3항 및 제10.2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면입장

라. 이용가능한 경우, 중재판정부의 심리 의사록 또는 속기록, 그리고

마. 중재판정부의 명령, 판정 및 결정

2. 중재판정부는 대중에게 공개하여 심리를 수행하며,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절차적 준비사항을 결정한다. 그러나, 보호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심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이를 알린다.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정보를 공개로부터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며, 적절한 조치에는 보호정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심리를 비공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3. 제4항라호를 포함하는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피청구국이 보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20.2조(안보 예외) 또는 제20.7조(정보의 공개)에 따라 자국이 보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4.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모든 보호정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공개로부터 보호된다.

가. 라호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들이나 중재판정부는 정보를 제공한 분쟁당사자가 나호에 따라 명백하게 지정한 경우 어떠한 보호정보도 어떠한 비분쟁당사국이나 대중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 나. 특정 정보가 보호정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설정한 일정에 따라 그 정보를 명백하게 지정한다.
- 다.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설정한 일정에 따라 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편집본을 제출한다. 편집본만이 제1항에 따라 공개된다.
- 라. 중재판정부는 제3항에 따라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의 지정에 관하여 분쟁당사자가 제기하는 이의에 대하여 결정한다. 중재판정부가 그러한 정보가 적정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출한 분쟁당사자는
 - 1)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는 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 2) 중재판정부의 결정 및 다호에 따라 지정을 정정하여 완전본과 편집본을 다시 제출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이 중 어떠한 경우든, 다른 쪽 분쟁당사자는, 필요한 때에는 언제나, 그 정보를 처음 제출한 분쟁당사자가 1목에 따라 철회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또는 그 정보를 처음 제출한 분쟁당사자의 2목에 따른 지정에 합치하게 정보를 재지정한 완전본과 편집본을 다시 제출한다. 그리고

- 마. 피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정보가 적정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서면결정을 내리는 것을 검토한다. 그러한 요청 후 60일 이내에 공동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는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어떠한 결정 또는 판정도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비분쟁당사국이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서면진술을 공동위원회에 그 기간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계속 유효하게 된다.

5.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피청구국이 자국법에 의하여 공개되도록 요구되는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10.28조 준거법

1. 제2항을 조건으로, 청구가 제10.20조제1항에 따라 제기되는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에 따라 분쟁 중인 쟁점을 결정한다.

2. 제18.2조제2항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모든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10.29조 병합

1. 제10.20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청구가 별도로 중재에 제기되어 있고 그 청구들이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병합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조건에 따라 병합명령을 구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라 병합명령을 구하는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임명권자와 그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에게 요청을 송달하며,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성명 및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3. 임명권자가 제2항에 따라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요청이 명백히 근거없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다.

4.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가. 청구인들의 합의로 임명되는 1인의 중재인

나. 피청구국에 의하여 임명되는 1인의 중재인, 그리고

다.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명되는 의장중재인. 다만, 의장중재인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5. 임명권자가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청구국 또는 청구인들이 제4항에 따라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피청구국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피청구국의 국민을 임명하도록 노력하고, 청구인들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비분쟁당사국의 국민을 임명하도록 노력한다.

6.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제10.20조제1항에 따라 중재에 제기된 둘 이상의 청구들이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청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명령에 의하여

- 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 할 수 있다.
- 나. 중재판정부가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한 판정이 다른 청구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우에, 그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또는
- 다. 제10.23조에 따라 이전에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만,
 - 1) 이전에 그 중재판정부의 분쟁당사자가 아니었던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구인들을 위한 중재인이 제4항가호 및 제5항에 따라 임명된다는 점을 제외하고, 그 중재판정부는 원래의 구성원들로 재구성된다. 그리고
 - 2) 그 중재판정부는 이전의 심리가 반복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7.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 경우, 제10.20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였고 제2항에 따른 요청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인은 제6항에 따른 명령에 자신이 포함되도록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

- 가.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 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청구인은 자신의 요청 사본을 임명권자에게 전달한다.

8.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절에 의하여 수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를 수행한다.

9. 제10.23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시받은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 청구 또는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10. 한쪽 분쟁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제10.23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이미 그 절차를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중재판정부의 절차를 보류하도록 제6항에 따른 자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명령할 수 있다.

제10.30조 판정

1.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에 최종적인 패소판정을 내리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다음만을 별도로 또는 조합하여 판정할 수 있다.

가.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 그리고

나.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피청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해 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10.20조제1항에 따라 중재청 구를 제기하는 경우, 그는 당사국의 투자자의 자격으로 입은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 중재판정부는 또한 이 절과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비용 및 변호사 보수를 판정할 수 있다.

4. 중재판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정하지 아니한다.

5.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분쟁당사자들 간 그리고 그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6. 제7항과 잠정 판정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재심 절차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는 자체 없이 판정을 지키고 준수한다.

7. 분쟁당사자는 다음 시점까지 최종 판정의 집행을 구하지 아니한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른 최종 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12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 2) 수정 또는 취소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그리고
-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 절차규칙,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제10.20조제3항라호에 따라 선택된 규칙에 따른 최종판정의 경우
-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파기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 2) 법원이 판정에 대한 수정·파기 또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하였고 더 이상의 불복청구가 없을 때
8. 각 당사국은 자국 관할권 내에서 판정이 인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9.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청구는 「뉴욕협약」 제1조의 목적상 상업적 관계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10.31조 문서의 송달

당사국에 대한 통보와 그 밖의 문서는 부속서 10-라에서 그 당사국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로 송달된다.

부속서 10-가 국제관습법

양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10.7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대로의 “국제관습법”이 국가가 법적 의무감으로부터 따르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국가관행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제10.7조에 대하여, 외국인의 경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지칭한다.

부속서 10-나 수용

1.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투자 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2. 수용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일 수 있다.
 - 가. 직접수용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한 국유화 또는 다른 직접수용에 의하여 당사국이 투자자의 재산을 명백하게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다. 그리고
 - 나. 간접수용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당사국이 투자자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다.
3.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 하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여러 요소 중에서 특히 다음을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 가.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한다.
 - 나. 정부 행위가 계약, 허가 또는 그 밖의 법적 문서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구속력이 있는 사전 서면 약속을 위반하는지 여부, 그리고
 - 다.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¹²
4. 간접 수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에 의한 투자자의 재산의 박탈이 그 목적에 비추어 신의성실하게 채택되고 적용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여겨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여야 한다.
5.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예컨대,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¹³

¹² 한국이 취한 행위의 경우, 관련 고려사항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과 같은 불균형적인 부담을 투자자가 지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¹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목록은 포괄적이지 아니하다.

부속서 10-다
중재 청구 제기

한국

1. 제10.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투자자가 한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 소송 절차에서 제1절상의 의무 위반을 주장한 경우, 그 투자자는 한국이 제1절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청구를 제2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하지 아니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뉴질랜드의 투자자가 한국이 제1절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한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선택은 최종적이며, 그 투자자는 그 이후에 제2절에 따른 중재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10-라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한국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한국에 송달된다.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제법무과

뉴질랜드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뉴질랜드에 송달된다.

The Secretar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195 Lambton Quay
Private Bag 18-901
Wellington
New Zealand

부속서 10-마 과세 및 수용

과세조치가 특정한 사실 상황에서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하며, 그러한 조사는 부속서 10-나에 열거된 요소들과 다음의 고려사항들을 포함하여 투자에 관련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 가. 세금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새로운 과세조치의 단순한 도입이나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관할권에서의 과세조치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 정책 · 원칙 및 관행에 합치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과세조치의 기피 또는 회피를 막기 위한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다. 특정 국적의 투자자 또는 특정한 납세자를 겨냥한 과세조치와는 반대로,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 라. 투자가 이루어진 때에 과세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었고 그 조치에 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였다면, 그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